

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율위한  
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(안)심사보고서

'92. 12. 22  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2. 11. 20  
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'92. 11. 20
- 다. 상정일자 : 제13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  
( '92.12.22 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최영명 )

- 가. 제출이유  
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면제대상 :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( 공공법인 )
- 대상물건 : 고속철도 본선, 정차장, 차량기지, 정비창 궤도부설, 전진기지,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
- 면제세목 :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
- 면제신청 :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구청장 직권으로 과세면제가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 전문위원 김현기 )

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가 관련 준칙을 시달하여 이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, 그 내용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에 근거하여 동 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과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재산

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제정조치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(운정용위원) : 마포구에는 대상물건이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?
- 답변(세무1과장 최영명) :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의 기지는 은평구 수색동으로 결정되었고 우리구에는 현재 확정된 지적고시는 없음. 그러나 사업추진중 우리구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정하는 것임.

5. 토론요지 : 장차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율위한  
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1992년11월20일  
제 출 자 : 마 포 구 청 장

1. 제정이유

- 고속철도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면제대상 :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( 공공법인 )
- 대상물건 : 고속철도 본선, 정차장, 차량기지, 정비창, 궤도부설, 전진기지,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 사업용 재산

- 면제세목 :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
- 면제신청 :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구청장직권으로 과세면제 가능

3. 제정근거

- 지방세법 제7조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)
  -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
 

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 면제 또는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4. 특별예산조치 필요없음

5. 제정안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에위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세면제)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 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본선, 정차장, 차량기지 및 정비차 궤도부설 전진기지, 송전선시설 등 고속철도건설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

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

사업소세를 면제한다.

제3조(면제신청)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예)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③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